

1	()
1	2	3
—	—	—
—	—	—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주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18년 1월 5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1월 12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회사 주권으로 10조주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최초발행가액 기준)]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 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자산을 보유, 운용하는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에 주로 투자하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 MLP 가격변동 위험 : MLP 지분증권은 해외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MLP 기초 자산 및 실물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MLP 보유 인프라 자산이 자연재해 또는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 세제 위험 : 이 투자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LP의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은 미국의 관련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이하 “FIRPTA” 라 합니다)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FIRPTA에 따라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투자비중, 거래량 등의 일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점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지만, 개별 MLP가 FIRPTA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8.01.05.)

MLP

(-) [: AN544]

1 ()

1	2	3	4	5	6
—	—	—	—	—	—
—	—	—	—	—	—

이 요약정보는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회사의 주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요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해외 에너지인프라 관련 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회사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함			
분류	투자회사, 특별자산 (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02-6950-00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발생일	2018년 1월 12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제한없음	인터넷뱅킹	온라인판매시스템 ^{주2)}
판매수수료	[선취] 납입금액의 1.0% 이하	[선취] 납입금액의 0.5% 이하	-	-	[후취] 0.15% 이내 ^{주2)}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60	0.30	1.00	0.5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0.70, [신탁업자]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0.03			
	기타	0.0189	0.0188	0.0188	0.0188
	총보수 비용	1.3789	1.0788	1.7788	1.2787
	합성총보수 비용	1.4033	1.1030	1.8032	1.0531
※ 주석사항		[상기 외 종류] C-I, C-f,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C-w, S-P(연금저축) [보수 지급시기] 판매/운용 등 : 매 3개월 후급, 기타 : 사유발생시 주1)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할 수 있음 주2)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해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판매시스템에 회원으			

	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의 후취판매수수료 부과됨 ※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참조		
매입방법	[17시 이전(경과후)] 3(4)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판매방법	[17시 이전(경과후)] 4(5)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8(9)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직전일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_.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해외 에너지인프라 관련 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회사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는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회사의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의 개요

- 회사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의 에너지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인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 NYSE 또는 NASDAQ에 상장된 MLP중 Midstream(석유· 가스를 생산하여 소비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에너지 인프라 자산) MLP에 주로 투자합니다.
- 각 MLP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배당수익률, 시가총액, 거래량, 자본차익 비과세 요건 등의 요소 고려)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투자대상인 midstream(에너지 인프라 자산) MLP 및 관련 주식은 취득하는 수익 중에서 상품 가격(유가/가스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장기계약에 의한 수송량 (volume)에 주로 연동되는 인프라자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midstream MLP 및 관련 주식은 꾸준한 현금흐름과 비교적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거시경제, 상품 시장,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하향식 분석 및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벨류에이션을 감안한 상향식 분석을 동시에 적용하여, midstream MLP 및 관련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본질가치와 시장에서의 평가가치 간 괴리를 활용하는 펀더멘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동 펀드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한 자산의 total return(주가상승률과 시가 배당률의 합산)의 제고를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동 펀드의 목적입니다.
-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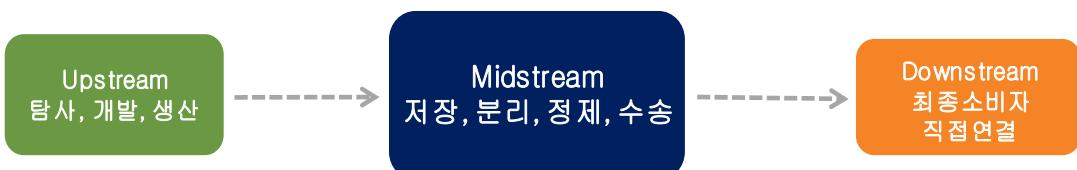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개요 및 구조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란 에너지인프라자산(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분리, 정제, 수송 등)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서 주로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 MLP는 MLP의 에너지인프라 자산을 운용하는 General Partner(이하 “GP”)와 일반 투자자인 Limited Partner(이하 “L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는 LP의 지위를 가지며 MLP의 지분에 투자하여 분기별로 배당금을 현금 분배 받고 있으며 또한 자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GP는 일반적으로 GP로서 MLP의 전체지분(GP와 LP를 합한 지분)의 2%를 보유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LP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GP 지분의 최초 지분 100%는 에너지 인프라 자산으로 MLP를 설립한 회사(이하 “Sponsor”)의 소유입니다. GP는 MLP의 에너지 인프라 자산을 운용하며 MLP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서 IDR(Incentive Distribution Right)이라는 일종의 초과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IDR은 배당이 높아질수록 GP가 수취하는 뷔이 증가하며, 시장의 모든 MLP들이 IDR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2/3 정도의 MLP들은 GP가 IDR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Midstream자산이란 석유·가스를 생산하여 소비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에너지 인프라 자산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프로세싱 설비 등을 말합니다.

■ 자원의 생산 과정



나. 투자 프로세스

1. 유니버스: 에너지 관련 MLP 및 midstream 에너지 회사

- 다음 요소를 고려한 MLP 등(midstream 에너지 기업 포함)을 유니버스로 지정
 - 꾸준한 현금흐름
 - 배당성장을
 - 해당 사업 부문의 commodity 가격 노출도 측정 가능성
- 투자대상
 - MLP, GP, midstream 에너지 회사
- 150 개内外의 유니버스

2. 모델 포트폴리오

- 정성적 분석
 - 영위사업 분석 및 주요투자자
 - GP/LP의 관계
 - 경영진 강점 및 향후 회사 성장성
- 정량적 분석
 - 현금흐름
 - 재무제표
 - valuation 등

3. Portfolio

- 상향식 & 하향식 분석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업, 지역, 섹터 배분
- 종목 최종 선정
 - valuation 및 상대적 매력도 감안
- 새로운 종목 편입 시 선별적으로 투자대상 종목을 늘림
- 총 종목수 : 25~ 50 개
- 정기적 포트폴리오 Rebalancing 시행

주) 상기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은 시장 상황, 투자 판단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위한 리서치 자문을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Alerian MLP Index TR 90% + 매경BP Call 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MLP 지분증권의 가격 변동 및 MLP 배당금의 배당수익률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이주수[책임]

(상기인은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6.11.13 ~ 17.11.12	15.11.13 ~ 16.11.12	14.11.13 ~ 15.11.12	14.01.20 ~ 14.11.12	
종류 A	-2.97	1.83	-28.42	20.52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주1) 비교지수 : Alerian MLP Index TR 90% + 매경BP Call 10%

주2) 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산가격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MLP에 주로 투자하므로 MLP 지분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회사 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MLP 지분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회사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재산 손실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모투자회사에서 원화-미국 달러화간 환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변동위험을 해지하며, 환해지 비율은 외화표시자산의 미국달러화 환산평가액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서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해지는 불가능하며,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해지를 실행함에 따라 투자대상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MLP 관련 위험	- MLP 지분증권은 해외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MLP 기초 자산 및 실물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MLP 보유 인프라 자산이 자연재해 또는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MLP는 석유/가스와 관련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석유/가스의 수급 및 가격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격 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위험	- 이 투자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LP의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은 미국의 관련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이하 “FIRPTA”)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FIRPTA에 따라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투자비중, 거래량 등의 일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점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지만, 개별 MLP가 FIRPTA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미국내에서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MLP 관련 세제 변경(배당소득세 이연과세, 외국인에 대한 FIRPTA 예외조항 배제 등)이 있는 경우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다 위험	회사는 미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정산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며, 투자회사의 설립·유지·정산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펀드가 소규모화 할수록 수익률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회사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분류: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주)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 MLP 위험관리: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MLP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주가 및 유동성(과거 3개월 일 평균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 환위험관리

1) 환해지 여부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2) 환해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원화-미국 달러화간 환율 변동위험을 해지합니다. 환해지 비율은 미국달러화 표시자산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해당 모투자회사는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서 모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설정·해지, 환율변동, 자산가격 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해지의 장단점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해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해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해지비용 등

환해지비용은 환해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개인투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주권 주주(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회사의 주권을 매입한 주주의 경우 동 투자회사의 주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 4)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주권 주주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의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AN544)						
종류 (클래스)	A	A-e	C	C-e	C-i	C-f	C-P (연금저축)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AN545	AN546	AN548	AN549	AN550	AN551	AU374
종류 (클래스)	C-Pe (연금저축)	C-RP (퇴직연금)	C-RPe (퇴직연금)	C-w	S	S-P (연금저축)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BU721	BK406	BU722	AN552	AQ613	AU37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집합투자기구)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회사는 10조주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주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회사 설립 이후 최초 신주발행(최초 설정)을 위한 모집기간 동안의 판매금액이 20억원 미만(다른 자펀드 판매금액 포함)인 경우 설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AN544)						
종류 (클래스)	A	A-e	C	C-e	C-i	C-f	C-P (연금저축)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AN545	AN546	AN548	AN549	AN550	AN551	AU374
종류 (클래스)	C-Pe (연금저축)	C-RP (퇴직연금)	C-RPe (퇴직연금)	C-w	S	S-P (연금저축)	
금융투자 협회 펀드코드	BU721	BK406	BU722	AN552	AQ613	AU37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3.12.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설립
2014.01.02	금융감독원 등록
2014.03.14	종류 S 주식 신설
2014.07.24	종류 C-P, S-P 주식 신설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16.10.31	<input type="checkbox"/>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이주수, 부책임: 남상원 => 책임: 이주수, 부책임: 없음 <input type="checkbox"/> 환매수수료 삭제
2016.12.16	1. 종류 C-RP(퇴직연금) 주식 신설 2. 종류 주식 명칭 변경: C-P => C-P(연금저축), S-P => S-P(연금저축)
2017.06.19	해외 투자문업자 선정: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2017.07.28	종류 주식 추가[C-Pe(연금저축), C-RPe(퇴직연금)]
2018.01.12	투자위험 등급 산정기준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투자위험등급 변경 : 2 등급(높은 위험) => 1 등급(매우 높은 위험)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투자회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대표전화 :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7년 11월 12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이주수	1972	파트장	2개	11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4년) - 한국투자신탁운용(2년) - 삼일회계법인(5년) - 대우인터내셔널(2년) - 한화자산운용(2013.7~현재)

주1) 상기인은 Global Solar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 없음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7년 11월 12일)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이주수	1972	파트장	2개	11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4년) - 한국투자신탁운용(2년) - 삼일회계법인(5년) - 대우인터내셔널(2년) - 한화자산운용(2013.7~현재)

주1) 상기인은 Global Solar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6. 10. 31	남상원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회사, 특별자산(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회사가 보유한 종류 주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최초 설정일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투 자업자	판매회 사	신탁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A	제한 없음	납입금 액의 1.0% 이하 ¹⁾	-	-	연0.70%	연0.60%	연0.03%	연0.03%	2014.01.20
A-e	인터넷뱅킹	납입금 액의 0.5% 이하 ¹⁾	-	-	연0.70%	연0.30%	연0.03%	연0.03%	2014.01.20
C	제한 없음	-	-	-	연0.70%	연1.00%	연0.03%	연0.03%	2014.01.20
C-e	인터넷뱅킹	-	-	-	연0.70%	연0.50%	연0.03%	연0.03%	2014.01.20
C-i	매수금액 50억원 이상	-	-	-	연0.70%	연0.20%	연0.03%	연0.03%	미설정
C-f	집합투자기구, 기관 투자자, 기금	-	-	-	연0.70%	연0.03%	연0.03%	연0.03%	2014.08.11
C-P(연금 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 의 가입자	-	-	-	연0.70%	연0.70%	연0.03%	연0.03%	2014.07.29
C-Pe(연 금저축)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소득 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의 가입자	-	-	-	연0.70%	연0.35%	연0.03%	연0.03%	미설정
C-RP(퇴 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상의 퇴직연 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	-	-	연0.70%	연0.60%	연0.03%	연0.03%	2017.02.23
C-RPe(퇴 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상의 퇴직연 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회사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 입할 수 있으며, 판 매수수료 없음	-	-	-	연0.70%	연0.30%	연0.03%	연0.03%	2017.08.18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금 전신탁	-	-	-	연0.70%	연0.00%	연0.03%	연0.03%	2014.0516
S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	-	3년미 만 환 매시 환매 금액 의	-	연0.70%	연0.25%	연0.03%	연0.03%	2014.04.23

	으로 가입한 투자자		0.15% 이내 ²⁾						
S-P(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이면서 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없음	-	-	-	연 0.70%	연 0.21%	연 0.03%	연 0.03%	2014.07.30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종류 S 주식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주식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모투자회사 명칭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의 에너지인프라 관련 특별자산(MLP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란 에너지인프라자산(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분리, 정제, 수송 등)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서 주로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 투자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한 현금흐름, 배당성장을, 해당 사업 부문의 commodity 가격 노출도 측정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MLP 등(midstream 에너지 기업 포함)을 유니버스로 지정 ✓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한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상향식 & 하향식 분석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업, 지역, 섹터 배분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 환해지 전략: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지목적의 거래(목표 해지비율은 환해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의 70% 이상이며 100%를 초과 할 수 있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위험	원금손실 위험, 인프라 자산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세제위험 등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해외 에너지인프라 관련 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회사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모투자회사 주식	- 100%이하	- 모투자회사 주식은 한화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주식을 말함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회사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 법시행령제 83 조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기 타	-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회사 주요 투자 대상>

-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특별자산	- 60% 이상	- 특별자산은 해외의 에너지인프라자산(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분리, 정제, 수송 등)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 등[Master Limited Partnership(이하 “MLP” 라 한다)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며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또는 상장이 예정된 것에 한한다)을 말함
②주식	- 40% 이하	- 주식은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함
③채권	- 40% 이하	- 채권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함.
④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함
⑤어음	- 40% 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말함
⑥집합투자증권등	- 40% 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은 법 제 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상기 ①의 MLP를 제외한다)을 말함
⑦파생상품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 파생상품은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해외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을 말함
⑧증권의 대여	- 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⑩증권의 차입	- 상기의 ②,③,④,⑤,⑥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20%이하	
기 타	-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대상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의 정관 제 51조제 1항제 3 호 및 제 5 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의 정관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헛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헛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회사 순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선물환 계약) 매매를 통한 환헷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②동일종목 증권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③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 투자대상의 ①, 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설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환매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사자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 투자대상의 ①, 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나. 투자제한의 ②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주식의 일부환매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 투자제한의 ②의 규정은 투자회사 설립 후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 제한>

-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 과의 거래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 증권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p>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③집합투자증권	<p>회사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회사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④MLP	상기 ③의 규정 준용.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MLP”, “MLP가 발행한 지분증권”, “MLP운용자”로 본다.
⑤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⑧장외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⑨계열회사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 투자대상의 ①, ②, ③, ④, ⑤, ⑥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회사 설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환매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4. 회사자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 투자대상의 ① ~ ⑥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 투자대상의 ⑦ ~ ⑩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 투자제한의 ② ~ 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1. 회사 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2. 주식의 일부환매
 -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4. 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 투자제한의 ②의 본문, ③의 가 및 나, ④, ⑤, ⑥, ⑦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회사는 한화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회사의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의 개요

- 회사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의 에너지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인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분산투자 합니다.
- NYSE 또는 NASDAQ에 상장된 MLP중 Midstream(석유· 가스를 생산하여 소비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에너지 인프라 자산) MLP에 주로 투자 합니다.
- 각 MLP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배당수익률, 시가총액, 거래량, 자본차익 비과세 요건 등의 요소 고려)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 투자대상인 midstream(에너지 인프라 자산) MLP 및 관련 주식은 취득하는 수익 중에서 상품가격 (유가/가스 가격)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장기계약에 의한 수송량(volume)에 주로 연동되는 인프라자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midstream MLP 및 관련 주식은 꾸준한 현금흐름과 비교적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거시경제, 상품 시장, 지역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하향식 분석 및 기업 자체의 경쟁력과 벨류에이션을 감안한 상향식 분석을 동시에 적용하여, midstream MLP 및 관련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본질가치와 시장에서의 평가가치 간 괴리를 활용하는 펀더멘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동 펀드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한 자산의 total return(주가상승률과 시가 배당률의 합산)의 제고를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동 펀드의 목적입니다.
-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용어 설명]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개요 및 구조

-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란 에너지인프라자산(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분리, 정제, 수송 등)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서 주로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 MLP는 MLP의 에너지인프라 자산을 운용하는 General Partner(이하 “GP”)와 일반 투자자인 Limited Partner(이하 “L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는 LP의 지위를 가지며 MLP의 지분에 투자하여 분기별로 배당금을 현금 분배 받고 있으며 또한 자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GP는 일반적으로 GP로서 MLP의 전체지분(GP와 LP를 합한 지분)의 2%를 보유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LP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GP 지분의 최초 지분 100%는 에너지 인프라 자산으로 MLP를 설립한 회사(이하 “Sponsor”)의 소유입니다. GP는 MLP의 에너지 인프라 자산을 운용하며 MLP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서 IDR(Incentive Distribution Right)이라는 일종의 초과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IDR은 배당이 높아질수록 GP가 수취하는 둑이 증가하며, 시장의 모든 MLP들이 IDR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2/3 정도의 MLP들은 GP가 IDR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Midstream자산이란 석유·가스를 생산하여 소비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 에너지 인프라 자산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프로세싱 설비 등을 말합니다.

■ 자원의 생산 과정



◎ 주요 Midstream 특징

주요 자산	자산의 특성	수익 창출 구조
파이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와 가스의 대부분을 수송 • 준공 이후 수명은 약 100년 • 제반 수송 수단 중 수송위험이 가장 낮음 • 석유/가스 유출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험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량에 따른 수익 구조(예, \$/배럴) • 계약 체결 종료 이후 설비 건설 • 최소 수송량 보장 계약 • 물가 + α 추가 수익 취득
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및 가스 재고를 저장하는 시설 • 수요의 계절성에 따른 저장 시설 필요 • 석유는 tank, 가스는 생산 종료된 가스정(depleted well)에 주로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시설의 용량에 따른 고정 수익 •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유사한 수익 • 석유/가스 저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저장 수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프로세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가스의 불순물 제거하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자산 • 가스(기체) 성분 가운데 유체로 변하는 NGL(Natural Gas Liquids ; 천연가스액)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싱을 해주는 대가에 따른 수수료(고정수익) 및 가스에서 추출한 NGL을 취하는 변동수익 등 다양한 계약구조 • 수익의 대부분이 고정 수익

나. 투자 프로세스

1. 유니버스: 에너지 관련 MLP 및 midstream 에너지 회사

- 다음 요소를 고려한 MLP 등(midstream 에너지 기업 포함)을 유니버스로 지정
 - 꾸준한 현금흐름
 - 배당성장을
 - 해당 사업 부문의 commodity 가격 노출도 측정 가능성
- 투자대상
 - MLP, GP, midstream 에너지 회사
- 150 개 내외의 유니버스

2. 모델 포트폴리오

- 정성적 분석
 - 영위사업 분석 및 주요투자자
 - GP/LP의 관계
 - 경영진 강점 및 향후 회사 성장성
- 정량적 분석
 - 현금흐름
 - 재무제표
 - valuation 등

3. Portfolio

- 상향식 & 하향식 분석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업, 지역, 섹터 배분
- 종목 최종 선정
 - valuation 및 상대적 매력도 감안
- 새로운 종목 편입 시 선별적으로 투자대상 종목을 늘림
- 총 종목수 : 25~ 50 개
- 정기적 포트폴리오 Rebalancing 시행

주) 상기 포트폴리오 구축 과정은 시장 상황, 투자 판단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위한 리서치 자문을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에게서 받고 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환해지 전략 및 환위험 관리

1) 환해지 여부

-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해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환해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환해지는 모투자회사에서 실행하며, 자투자회사에서는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2) 환해지 방법 및 목표 해지비율

-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원화-미국 달러화간 환율 변동위험을 해지합니다.
- 환해지 비율은 미국달러화 표시자산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해당 모투자회사는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서 모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해지는 불가능하며, 설정·해지, 환율변동, 자산가격 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환해지의 장단점

-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해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해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해지비용 등

-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해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해지비용은 환해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3) 이 투자회사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Alerian MLP Index TR 90% + 매경BP Call 10%

- Alerian MLP Index TR (AMZX): MLP인덱스를 최초로 개발한 Alerian Capital Management에서 공표하는 지수로서, 가장 대표적인 MLP 50 종목을 유동비율로 조정된 시가총액 방식으로 배당수익률을 반영한 총수익률 지수
- 매경BP Call: 한국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자금시장지수 중 하나로서, 콜금리의 변동 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유동성 지수

(4)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MLP 위험관리 :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MLP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주가 및 유동성(과거 3개월 일 평균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의 모투자회사는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에서 투자한 MLP 지분증권의 가격 변동 및 MLP 배당금의 배당수익률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투자회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산가격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MLP에 주로 투자하므로 MLP 지분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회사 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MLP 지분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회사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회사는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MLP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렇게 환율변동에 따른 회사재산 손실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모투자회사에서 원화-미국 달러화간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며, 환헤지 비율은 외화표시자산의 미국달러화 환산평가액의 70%이상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서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투자대상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MLP 지분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분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MLP 관련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P 지분증권은 해외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어 MLP 기초 자산 및 실물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 MLP 보유 인프라 자산이 자연재해 또는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MLP는 석유/가스와 관련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석유/가스의 수급 및 가격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격 변동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MLP의 매매에 따라 발생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은 미국의 관련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이하 “FIRPTA”)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FIRPTA에 따라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투자비중, 거래량 등의 일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점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지만, 개별 MLP가 FIRPTA 적용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MLP 관련 세제 변경(배당소득세 이연과세, 외국인에 대한 FIRPTA 예외조항 배제 등)이 있는 경우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다 위험	회사는 미국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정산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며, 투자회사의 설립· 유지· 청산 등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펀드가 소규모화 할수록 수익률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 자문업자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해외 자문업자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해외 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회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규모위험	투자회사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회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회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피흡수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주주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회사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 27.92%)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회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매우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회사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¹⁾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²⁾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초과하는집합투자기구³⁾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 고위험자산 ⁴⁾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초과하고 20%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수 있으면서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⁵⁾을 만족하는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저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5년 이상 적립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⁶⁾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⁷⁾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금융공학적 운용기법을 도입한 원금보존 추구형이지만, 실제 운용상에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⁸⁾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²⁾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국공채 및 A-등급 이상 채권 등에 7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⁹⁾ 2년 이상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¹⁰⁾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듀레이션 2년 이하이면서 국공채에 최저 7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1)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은 파생결합증권 투자금액을 포함함

2) 구조상 최대손실가능성 및 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은 발행자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감안하지 않고 설계구조만을 의미함

3)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도 기초자산의 변동성, 거래상대방위험, 레버리지수준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4)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5) 분산요건이라 함은 국내주식 1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KOSPI 또는 KOSPI200 수준의 섹터분산이 된 지수를 의미함
- 6)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투자지역 등에 따라 위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7)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8)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9) 듀레이션은 펀드의 실제 듀레이션이 아닌 비교지수의 듀레이션을 의미함
- 10) 5등급과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국내 공모주(Post IPO주식 포함)에 15% 이하 및 투자등급채권 등에 5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Post IPO주식이란 투자시점 기준으로 KOSPI, KOSDAQ에 신규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함)
 - 설정 후 1년이 경과된 펀드로서 전체 운용기간 내 주간수익률로 산출한 연환산 변동성이 5%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위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리스크관리담당부서, 운용담당자, 상품개발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위험등급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판단함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예시 외에 고객 위험성향에 따라 국제적 분산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재간접형 펀드를 포함하여 위 위험등급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레버리지수준, 벤치마크지수의 위험수준, 분산투자수준, 목표트레킹에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전략의 복잡성, 상품의 친밀도, 만기기간 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실제 수익률 변동성 분류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매 결산시점마다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산출하여 등급을 분류함. 단,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분류 기준이 아닌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회사의 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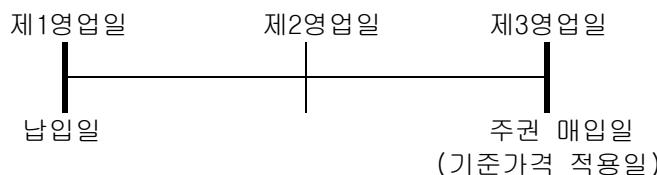
(2) 종류 주식별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종류A	매수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종류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 있음
종류C	매수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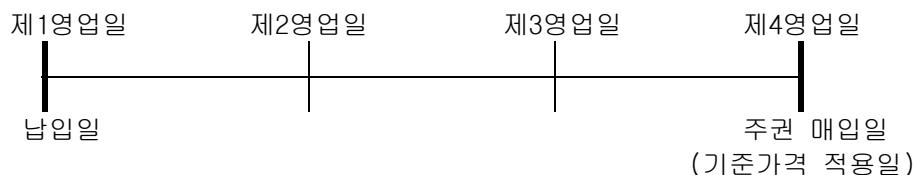
종류C-i	매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매수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매수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P(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Pe(연금저축)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R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R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매수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후취판매수수료 있음
종류 S-P(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이면서 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주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청약을 신청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주권의 기준가격 적용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 단, 이 투자회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회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주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합니다.

※ 마켓타이밍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의 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된 과도한 매매,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켓타이밍은 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주권에 대한 단기간의 매입, 환매행위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주주(투자자)간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거나 마켓타이밍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의 주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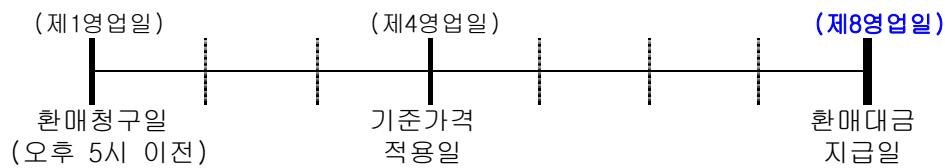
나. 환매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회사 주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당해 종류별 주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당해 종류별 주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을 말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회사 주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주권의 일부환매

주주(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주권을 환매하고, 잔여주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합니다.

(6)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의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17시[오후5시]경과 후에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전일)과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② 해산한 경우

③ 회사의 순자산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④ 결산일 직전 제7영업일전일 17시[오후5시] 경과 후부터 제6영업일전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⑤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된 경우

(7) 환매연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회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주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주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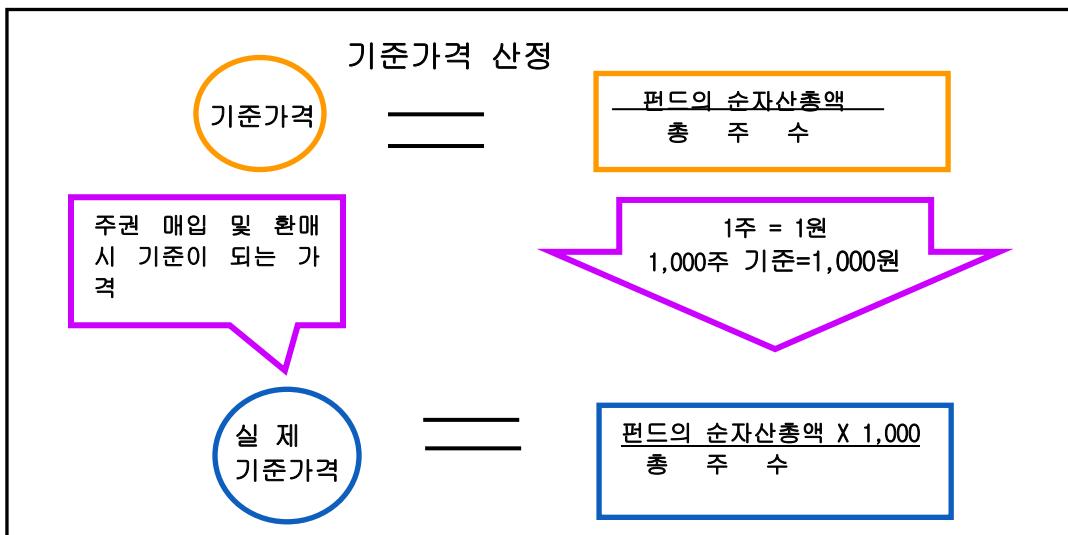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연기주주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투자회사 주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여,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회사는 종류형 투자회사로서 각 종류 주식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투자회사 기준가격	모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회사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 ^{주1)} 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 취득가격 2. 거래가격 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

	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p>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 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증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 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 종가괴리를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 없음	1.0% 이하 ¹⁾	-	-	-
A-e	인터넷뱅킹	0.5% 이하 ¹⁾	-	-	-
C	제한 없음	-	-	-	-
C-e	인터넷뱅킹	-	-	-	-
C-i	50억원 이상	-	-	-	-
C-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	-	-	-
C-P(연금 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C-Pe(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	-	-	-	-

금저축)	킹을 통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 C-R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	-	-	-
종류 C-R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없음	-	-	-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금전신탁	-	-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²⁾	-	-
S-P(연금저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이면서 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	-	-
부과기준		납입금액	환매금액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2) 종류 S주식에 대한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미만 환매시 주식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 보수 ·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70	0.60	0.03	0.03	0.0189	1.3789	1.4033	0.5286
A-e	0.70	0.30	0.03	0.03	0.0188	1.0788	1.1030	0.5208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C	0.70	1.00	0.03	0.03	0.0188	1.7788	1.8032	0.5261
C-e	0.70	0.50	0.03	0.03	0.0187	1.2787	1.3030	0.5233
C-i	0.70	0.20	0.03	0.03	-	0.9600	0.9600	-
C-f	0.70	0.03	0.03	0.03	0.0109	0.8009	0.8206	0.3903
C-P(연금저축)	0.70	0.70	0.03	0.03	0.0187	1.4787	1.5034	0.5434
C-Pe(연금저축)	0.70	0.35	0.03	0.03	-	1.1100	1.1100	-
C-RP(퇴직연금)	0.70	0.60	0.03	0.03	0.0175	1.3775	1.4194	0.0917
C-RPe(퇴직연금)	0.70	0.30	0.03	0.03	0.0191	1.0791	1.1415	0.0818
C-w	0.70	0.00	0.03	0.03	0.0129	0.7729	0.7906	0.4046
S	0.70	0.25	0.03	0.03	0.0188	1.0288	1.0531	0.5234
S-P(연금저축)	0.70	0.21	0.03	0.03	0.0180	0.9880	1.0124	0.528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회사의 직전 회계연도(2016.01.01 ~ 2016.12.31)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6.01.01 ~ 2016.12.3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자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회사(자투자회사)가 모투자회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회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144	447	772	1,692
종류 A-e	113	352	611	1,349
종류 C	185	572	984	2,134
종류 C-e	134	416	719	1,579
종류 C-i	98	310	544	1,238
종류 C-f	84	263	457	1,017
종류 C-P(연금저축)	154	478	826	1,804
종류 C-Pe(연금저축)	114	359	629	1,431
종류 C-RP(퇴직연금)	145	452	781	1,710
종류 C-RPe(퇴직연금)	117	365	632	1,394
종류 C-w	81	253	441	982

종류 S	108	337	584	1,291
종류 S-P(연금저축)	104	324	562	1,244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 주식은 1.0% 및 종류 A-e 주식은 0.5%로 가정)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주식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주식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투자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투자회사 주권으로 분배하여야 하지만,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주식의 주주는 동 분배금에 대해서 회사의 주권으로만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이외의 주식의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주권을 매수합니다.

(2) 분배금 등의 지급

- 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 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하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경우 기준가격의 하락 또는 보유주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른 결산분배금 또는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청산분배금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분배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분배금 등을 지체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투자회사 자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금의 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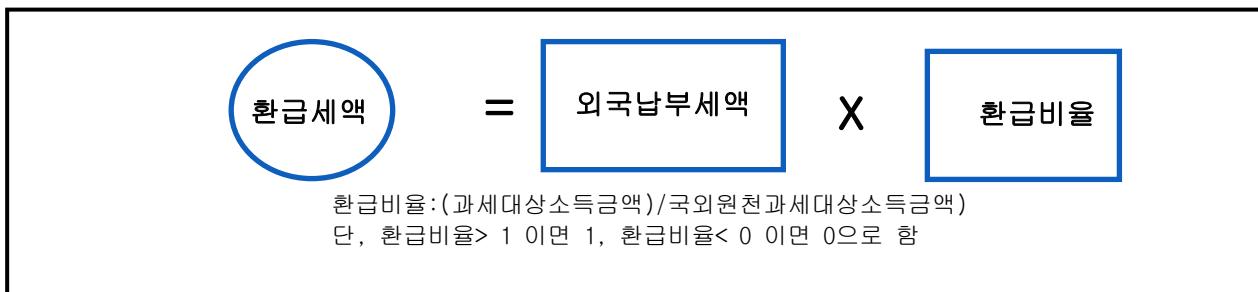
- 투자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은 주주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회사가 각 결산기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개인주주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세

- 개방형 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할 경우, 환매 시 이익은 장외주식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는 투자회사 보유주식(상장 주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주가지수선물·옵션의 매매·평가 차익은 제외되며, 보유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보유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보유채권의 양도차익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상품선물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2)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개인투자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나, 당해년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투자가 투자회사의 대주주(투자회사 지분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한 주주)인 경우에도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법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주주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회사의 주주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자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MLP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과세

미국의 관련 세법에 따라 회사가 MLP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배당소득

- 각 MLP별로 매 분기 배당금을 회사에 지급할 때에 각 MLP별로 15% 원천징수
-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회사가 각 MLP들로부터 총 수취한 배당소득 금액에 대하여 15%에서 최고 35%의 누진세율로 과세(정산)됩니다.
-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국내에서 환급비율에 따라 일정부분 환급 받게 됩니다.(배당 소득금액의 14% 한도)

- 다만, MLP 투자에 대한 이 펀드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액은 각 MLP 사업연도 소득에서 감가상각비 등 각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MLP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상기 차감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하여 집니다.
- 이 펀드의 과세표준액은 MLP의 각 사업연도 종료 후에 결정이 되므로 투자회사에서는 MLP의 사업연도 중에는 각 MLP로 부터 발생하게 될 과세표준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 펀드가 부담해야 될 배당세율을 사전에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 이후 MLP의 배당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유보 및 적립한 금액과 배당세액의 차액을 이 투자회사의 자산에 귀속되게 되며 일시에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 한편, 유보 및 적립한 금액과 배당세액의 차액을 펀드 자산에 귀속하기 전에 환매를 한 투자자에 대하여 추가로 환매대금, 이익분배금, 상환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자본소득(Capital Gain)

- 외국인의 미국 Real Property에 대한 투자자로부터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와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세 적용이 원칙
- 다만, 관련 세법(FIRPTA)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자본소득(Capital Gain)에 대해 비과세
- 회사는 사전적으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MLP를 선별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일정한 전제조건 충족여부는 사후적으로 최종 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부 MLP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MLP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주식의 주주(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동 투자회사의 주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주권 주주에 대한 과세-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투자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결격요건 해당 여부
한화자산운용(주)	116-81-22351	-	1억주	해당사항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결격요건 해당여부
이성우	1971.9.17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공인노무사/세무사 현)세무법인 정상	해당사항 없음
김도형	1972.12.14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한울회계법인(2005), 안세회계법인(2007) 현) 우리세무회계사무소	해당사항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 매월 15만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2기, 제3기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산총액 등 회계감사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의거 동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제4기는 회계기간 미경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7.06.30)	(2016.12.31)	(2015.12.31)
운용자산	33,000,666,604	22,792,091,582	24,485,406,578
증권	32,632,429,196	22,543,905,613	24,338,870,74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8,237,408	248,185,969	146,535,83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42,761,796	128,868,294	146,973,974
자산총계	33,243,428,400	22,920,959,876	24,632,380,55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45,390,122	131,712,368	149,822,215
부채총계	245,390,122	131,712,368	149,822,215
원본	41,735,259,475	27,432,492,978	36,715,327,474
수익조정금	496,672,519	1,268,208,046	3,003,760,568
이익잉여금	-9,233,893,716	-5,911,453,516	-15,236,529,705
자본총계	32,998,038,278	22,789,247,508	24,482,558,33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7.01.01 – 2017.06.30)	(2016.01.01 – 2016.12.31)	(2015.01.01 – 2015.12.31)
운용수익	-2,167,757,417	3,228,621,536	-15,233,846,468
이자수익	230,550	90,518	85,93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167,987,967	3,228,531,018	-15,233,932,398
기타수익	0	3,864,321	1,340,763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993,248	4,014,000	4,024,000
당기순이익	-2,169,750,665	3,228,471,857	-15,236,529,70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 목	제4기(2017.06.30)		제3기(2016.12.31)		제2기(2015.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368,237,408		368,237,408		248,185,969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0,050				12,054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3,243,428,400			22,920,959,876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45,390,122			131,712,368	
자 본						
1. 원 본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발행좌수 당기): 41,735,259,475 좌						
전기: 27,432,492,978 좌						
전전기: 36,715,327,474 좌)						
(기준가격 당기): 790.65 원						
전기: 830.74 원						
전전기: 666.82 원)						
자 본 총 계		32,998,038,278			22,789,247,50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243,428,400			22,920,959,876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4기(2017.01.01-2017.06.30)		제3기(2016.01.01-2016.12.31)		제2기(2015.01.01-2015.12.31)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 이 자 수 익	230,550	230,550	90,518	3,954,839	85,930	1,426,693
2. 배당금수익			3,864,321		1,340,76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8,819,608		4,585,870,689		7,506,852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8,819,608		4,585,870,689		7,506,852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246,807,575		1,357,339,671		15,241,439,25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079,807,172		1,357,339,671		15,241,439,250	
4. 운용비용		1,993,248		4,014,000		4,024,00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993,248		4,014,000		4,024,000	
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169,750,665		3,228,471,857		-15,236,529,705
6. 총당순이익(또는 총당순손실)		-0.051988431		0.117687877		-0.41499097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원, 억좌)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설정(발행)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A	2017.01.01 ~ 2017.06.30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금액	(출자지분수)	금액	(출자지분수)	금액
	2016.01.01 ~ 2016.12.31	155	125	77	64	27	21	204	156
	2015.01.01 ~ 2015.12.31	164	108	33	23	43	31	155	125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설정(발행)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A-e	2017.01.01 ~ 2017.06.30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금액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A-e	2016.01.01 ~ 2016.12.31	21	17	10	8	15	12	17	13
	2015.01.01 ~ 2015.12.31	19	12	8	5	5	4	21	17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C	2017.01.01 ~ 2017.06.30	33	26	23	19	12	10	44	33
	2016.01.01 ~ 2016.12.31	30	20	10	7	8	6	33	26
	2015.01.01 ~ 2015.12.31	47	47	11	11	28	26	30	20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C-e	2017.01.01 ~ 2017.06.30	16	13	11	9	6	5	21	16
	2016.01.01 ~ 2016.12.31	14	10	6	4	4	3	16	13
	2015.01.01 ~ 2015.12.31	20	20	6	6	12	11	14	10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C-f	2017.01.01 ~ 2017.06.30	0	0	50	50	0	0	50	47
	2016.01.01 ~ 2016.12.31	100	66	0	0	100	53	0	0
	2015.01.01 ~ 2015.12.31	100	99	201	100	201	78	100	66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C-w	2017.01.01 ~ 2017.06.30	3	3	6	6	7	6	3	2
	2016.01.01 ~ 2016.12.31	7	7	6	6	10	10	3	3
	2015.01.01 ~ 2015.12.31	14	14	8	8	15	13	7	7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S	2017.01.01 ~ 2017.06.30	13	10	7	6	7	5	13	10
	2016.01.01 ~ 2016.12.31	12	8	4	2	3	2	13	10
	2015.01.01 ~ 2015.12.31	17	17	6	5	11	10	12	8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C-P(연금저축)	2017.01.01 ~ 2017.06.30	39	30	42	34	17	13	65	47
	2016.01.01 ~ 2016.12.31	20	13	30	20	11	7	39	30
	2015.01.01 ~ 2015.12.31	15	14	18	16	12	10	20	13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S-P	2017.01.01 ~ 2017.06.30	3	2	4	3	2	2	5	4
	2016.01.01 ~ 2016.12.31	2	1	3	2	2	1	3	2
	2015.01.01 ~ 2015.12.31	1	1	2	2	1	1	2	1

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종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C-RP(퇴직 연금)	2017.01.01 ~ 2017.06.30	0	0	1	1	0	0	1	1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10조주	1억주	99,999억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구분	출자자	종류	발행한 지분의 총수	발행가액 총액
투자회사 주권	한화 자산운용	기명식 보통 주식, 무액면	1억주(1주당1원)	1억원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6.11.13 ~ 17.11.12	15.11.13 ~ 17.11.12	14.11.13 ~ 17.11.12		14.01.20 ~ 17.11.12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1.63	0.77	-9.66		-3.59
비교지수	-3.19	0.39	-10.85		-5.37
종류 A	-2.97	-0.59	-10.90		-4.90
비교지수	-3.19	0.39	-10.85		-5.37
종류 A-e	-2.68	-0.30	-10.63		-4.62
비교지수	-3.19	0.39	-10.85		-5.37
종류 C	-3.36	-0.99	-11.26		-5.29
비교지수	-3.19	0.39	-10.85		-5.37
종류 C-e	-2.87	-0.50	-10.81		-4.81
비교지수	-3.19	0.39	-10.85		-5.37
종류 C-f	-11.31	10.49	-4.21		-3.62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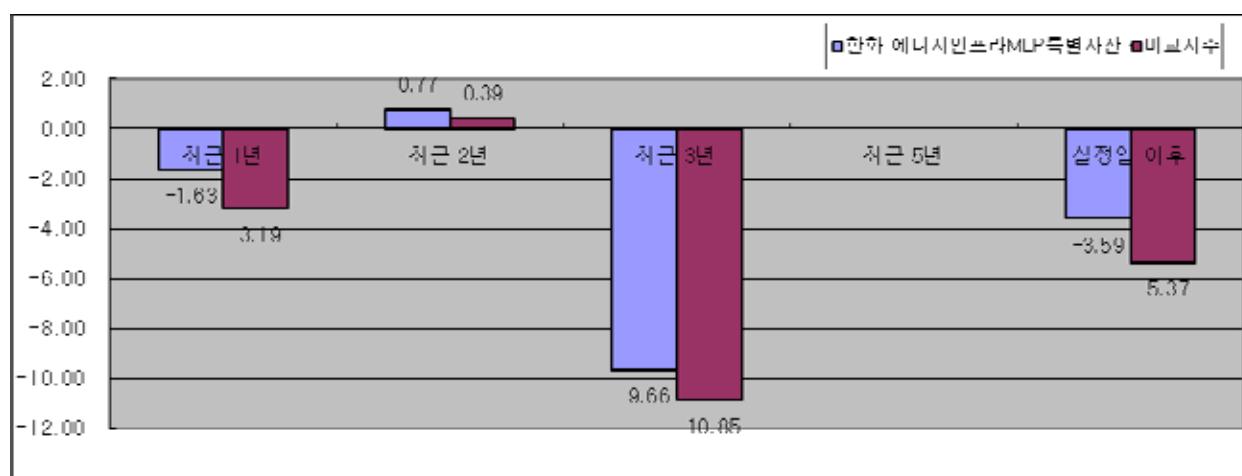
비교지수	-10.41	11.75	-4.25		-3.31
종류 C-w	-2.38	-4.08	-1.98		-0.76
비교지수	-3.19	-3.39	-3.67		-1.84
종류 S	-2.63	-0.25	-10.59		-7.74
비교지수	-3.19	0.39	-10.85		-7.61
종류 C-P	-3.07	-0.70	-10.99		-10.74
비교지수	-3.19	0.39	-10.85		-10.39
종류 S-P	-2.58	-0.21	-10.55		-10.26
비교지수	-3.19	0.39	-10.85		-10.39
종류 C-RP(퇴직연금)					-21.35
비교지수					-18.88
종류 C-RPe(퇴직연금)					1.74
비교지수					4.41

(주 1) 비교지수 : Alerian MLP Index TR 90% + 매경 BP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6.11.13 ~ 17.11.12	15.11.13 ~ 16.11.12	14.11.13 ~ 15.11.12	14.01.20 ~ 14.11.12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1.63	3.21	-27.40	22.08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종류 A	-2.97	1.83	-28.42	20.52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종류 A-e	-2.68	2.13	-28.20	20.87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종류 C	-3.36	1.43	-28.72	20.06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종류 C-e	-2.87	1.93	-28.35	20.63	
비교지수	-3.19	4.09	-29.70	17.61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종류 C-f	-11.31	37.55	-28.00		
비교지수	-10.41	39.27	-29.70		
종류 C-w	-2.38	-5.74	2.38	6.80	
비교지수	-3.19	-3.58	-4.22	9.74	
종류 S	-2.63	2.18	-28.16	8.93	
비교지수	-3.19	4.09	-29.70	11.56	
종류 C-P	-3.07	1.73	-28.49		
비교지수	-3.19	4.09	-29.70		
종류 S-P	-2.58	2.22	-28.13		
비교지수	-3.19	4.09	-29.70		
종류 C-RP(퇴직연금)	-22.05				
비교지수	-19.42				
종류 C-RPe(퇴직연금)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Alerian MLP Index TR 90% + 매경 BP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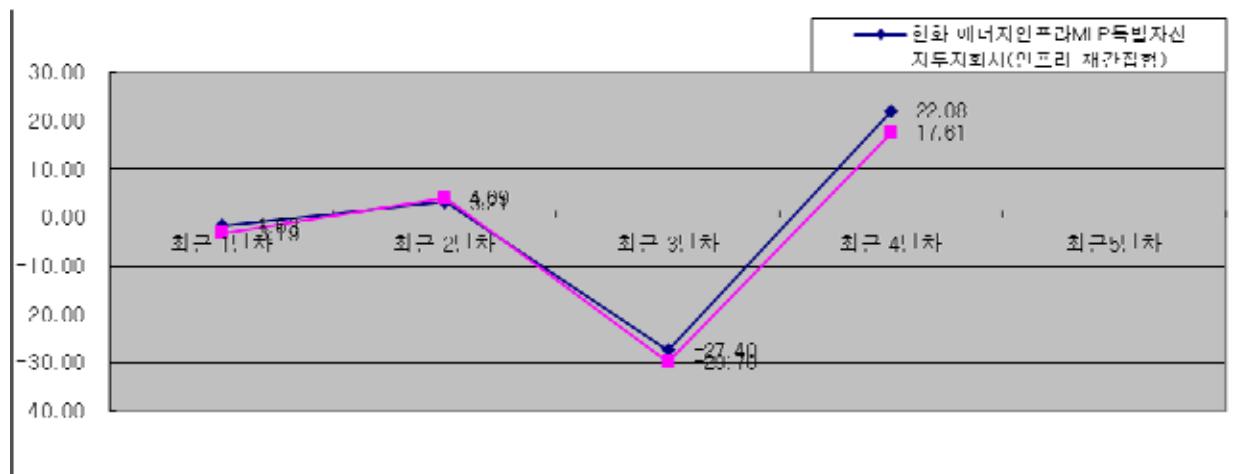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은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 2017. 9. 30)-모투자회사의 자산구성 현황

KRW	0	0	0	0	0	0	0	0	0	2	8	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90)	(79.10)	(3.00)
CAD	17	0	0	0	0	0	0	0	0	0	0	17
	(99.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0.00)	(4.00)
USD	54	0	0	295	0	-10	0	0	0	8	0	348
	(15.64)	(0.00)	(0.00)	(84.83)	(0.00)	-(2.79)	(0.00)	(0.00)	(0.00)	(2.33)	(0.00)	(93.00)
	71	0	0	295	0	-10	0	0	0	10	8	375
	(19.00)	(0.00)	(0.00)	(78.75)	(0.00)	-(2.59)	(0.00)	(0.00)	(0.00)	(2.73)	(2.1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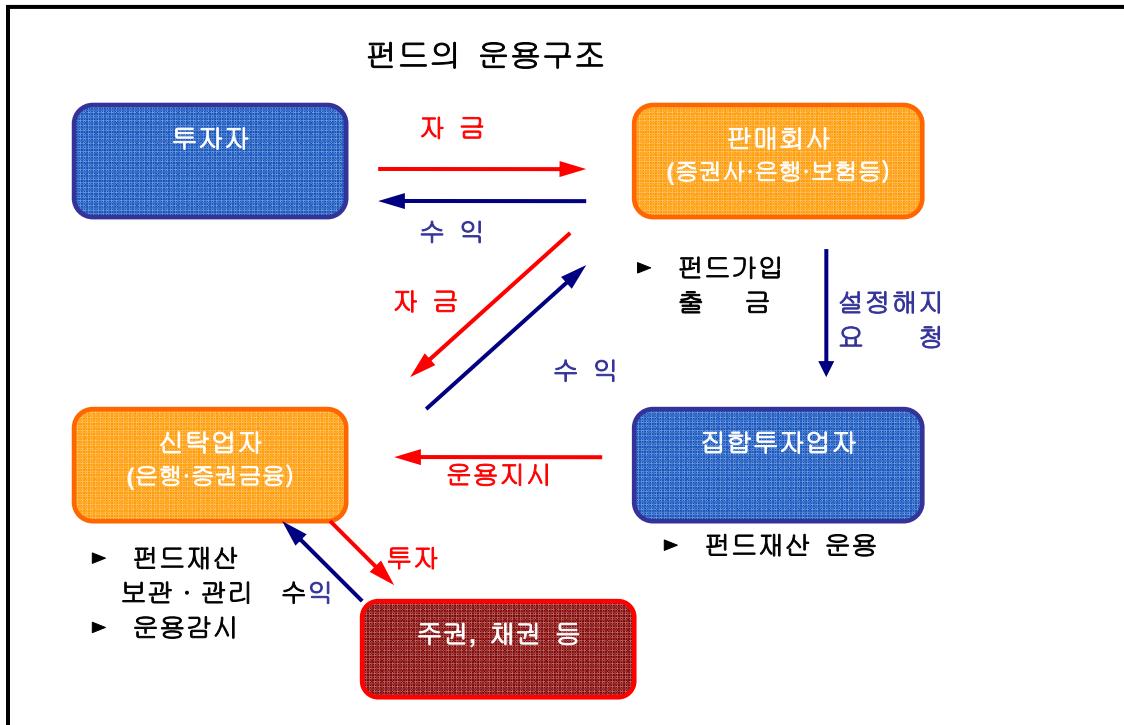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푸르덴셜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6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투자회사의 설립, 해산 / 투자회사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29기	제28기	항목	제29기	제28기
	('16.12.31)	('15.12.31)		16.1.1~16.12.31	15.1.1~15.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25,403	1,931	영업수익	76,570	62,17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3,160	32,677	영업비용	41,925	40,357
매도가능금융자산	40,674	48,033	영업이익	34,645	21,820
종속기업투자	25,459	16,371	영업외수익	1,900	178
대여금및수취채권	43,428	26,505	영업외비용	979	1,139
유형자산	2,027	2,314	법인세차감전	35,567	20,859
투자부동산	-	20,797	법인세비용	8,322	4,959
무형자산	5,382	6,042	<u>당기순이익</u>	27,245	15,900
이연법인세자산	1,460	1,216			
기타자산	584	424			
자산총계	177,577	156,310			
예수부채	200	-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채	7,392	8,201			
충당부채	578	786			
순확정급여부채	-231	259			
당기법인세부채	5,749	3,840			
기타부채	427	363			
부채총계	14,115	13,449			
자본금	60,000	60,000			
자본잉여금	8,325	8,3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04	459			
이익잉여금	96,341	74,077			
자본총계	163,462	142,861			
부채및자본총계	177,577	156,310			

라. 운용자산 규모

(2017.11.12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종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 형	재간접 형	파생형	기 타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수탁고	27,276	37,849	4,462	0	7,247	16,821	0	19,321	31,698	0	52,252	196,926
-----	--------	--------	-------	---	-------	--------	---	--------	--------	---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해외 투자자문업자 및 내용

해당 펀드	한화 에너지인프라 MLP 특별자산 모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해외 투자자문업자	Cohen & Steers Capital Management, Inc.
자문범위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리서치 자문
회사주소	280 Park Avenue, New York, NY 11017-1216, USA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84 (전화) 1644-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식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회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iitas.com

나.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두며,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이사가 소집 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 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회사는 주주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주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는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 정관으로 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 투자회사 종류의 변경(투자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 일의 연장,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 제2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3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주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 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는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는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분배금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신탁업자가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청산분배금 등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산일 현재 회사 자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배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주주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주주에 관련된 투자회사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주주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법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마. 재판관할

-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신정 1동 313-1) T.(02)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회사의 정관 등 회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기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를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 투자회사의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 주주(법인이사의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회사의 기본변동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회계감사]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산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정관으로 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투자회사종류의 변경(투자회사를 설정할 당시에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변경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환매금지형 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회사가 정관 변경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가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wha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정관의 변경에 의한

-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16. 11. 13 ~ 2017. 11. 12)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h3>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h3>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MLP (Master Limited Partnership)	에너지인프라자산(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저장, 분리, 정제, 수송 등)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합자회사로서 주로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주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한화 에너지인프라MLP특별자산 자투자회사(인프라-재간접형)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